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해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축산분야에도 그 잣대가 더욱 업격해지고 있다. 특히 올 초 일부 지역 행정기관들은 사슴사육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신고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슴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통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하달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원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돼 관련 사항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목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장지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 삭감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 액비로 자원화 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4대상 유역과 새만금지역 등)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96년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기계 설비를 보완해야 할 농가에 지원
- 나정착촌 지역의 축산분뇨처리 개선 및 경작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자금 지원

*汚糞法 제4조의 3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의 신규지원은 불가(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가능)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汚糞法 제25조(축산폐수시설의 설치 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 1992-1999 | 2000 | 2001 | 2002 | 2003-2004 |
|-------------|-----------|---------|--------|------------|-----------|
| 사 업 량 | 61,268 | 3,000 | 2,500 | 3,400 | 6,000 |
| 사 업 비 | 계 | 879,183 | 56,200 | 36,360 | 42,360 |
| | 보 조 | 395,822 | 18,780 | 12,108\24, | 18,108 |
| | 용 자 | 357,131 | 37,420 | 252 | 24,252 |
| | 자 부 담 | 144,230 | - | - | - |

5.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 대책 지역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지원 가능
- 축산분뇨처리설을 1996.12월말 이전

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나)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96.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 자금지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도발생 등으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농기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수농가에 대하여 노후시설·기계장비의

보완자금을 지원가능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지역 농·축협

(다) 텁밥제조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축·산림조합

(라) 정착촌구조개선

- 나한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지방자치단체

- 법인체·한성협동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6.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마)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농협작목반 등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저장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축산폐수 배수로

- 정화방류시설 : 오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텁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액비운반탱크(압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타, 경운기, 축산분뇨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나) 공동시설

- 축분퇴비 및 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저장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공동퇴비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오분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바륨카, 압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압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다,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고액분리기,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 액비전문처리업체는 바륨카, 압롤카, 액비살포차량, 압롤박스, 액비살포장비, 이동식액비저장조 지원

○ 폐가축 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 양돈·양계단지에 설치가능

- 악취·파리발생 방지 및 가축전염병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되 소각로 시설은 제외

○ 축분퇴비유통센터(농립부로부터 지원 받은 조합에 한함) : 비료제조시설, 축산분뇨운반차량, 압축카, 바콤카, 파렛트, 운반탱크, 축분퇴비 저장창고, 포장 시설 등

(다) 텁밥제조시설 : 팽연왕겨제조시설(미곡종합처리장에 한함), 공동시설 공급용 텁밥제조시설, 이동식 텁밥제조기
(라)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 단독시설 또는 (나) 공동시설

○ 전북 익산 왕궁지역의 경우 공동시설로서 축산폐수전용차집관로, 축산폐수전처리시설, 우수차집관로를 설치(익산시에서 주관)

(마)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바)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 m^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2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 m^2 단위당 사업단가

(단위 : 천원/ m^2)

| 축 종 | 돼 지 | 한 · 육우 | 젖 소 | 닭 | |
|-----|-----|--------|-----|-----|-----|
| | | | | 평 사 | 케이지 |
| 단 가 | 74 | 30 | 35 | 21 |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참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 · 산양은 닭 평사, 말 · 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2 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⑤ 1996.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

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시설 · 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나환자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 · 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농가 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농가의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 구 분 | 돼 지 | 한 우 | 젖 소 | 닭 | |
|---------|-------|-----|-----|-----------------|-------|
| | | | | 평 사 | 케이지 |
| 단독시설 | 300 | | | 200 | |
| 공동시설 | 1,500 | | 800 | | 1,000 |
| 톱밥제조시설 | | | | 120 | |
| 정착촌구조개선 | | | | 단독·공동시설에 준함 | |
| 액비저장조설치 | | | | 15(200톤 규모 1기당) | |

* ①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나환자 정착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성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④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창고형 건물의 개·보수비는 자부담

⑤ 액비저장조설치는 200톤 규모 1기당 기준(예)이므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규격 및 제품재질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저장조 설치수량 및 규격은 농가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⑥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의 공동시설과 폐가축등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설지원은 공동시설의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3)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 1천만원 이내(스키드로다는 2천만원 이내)

○ 축산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천만원 이내

○ 폐가축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시·도지사 결정)

○ 축분퇴비유통센터(RPC포함)의 왕겨팽연화시설·장비 : 1억2천만원 이내

4)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용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4.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 지원비율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텁밥제조기시설 : 보조 30%, 융자 7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4) 2002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 세부사업별 | 사업량 | 사업비 | | | | | |
|-----------|-------|--------|-----------|--------|--------|-------|-------|
| | | 합계 | 예산액(농특회계) | | | 지방비 | 자부담 |
| | | | 계 | 보조 | 융자 | | |
| 단독 · 공동시설 | | 32,760 | 32,760 | 9,828 | 22,932 | - | - |
| 정착촌구조개선 | | 9,000 | 7,200 | 6,300 | 900 | 1,800 | - |
| 톱밥제조시설 | 5개소 | 600 | 600 | 180 | 420 | - | - |
| 액비저장조설치 | 400개소 | 6,000 | 1,800 | 1,800 | - | 3,000 | 1,200 |
| 합계 | | 48,360 | 18,108 | 18,108 | 24,252 | 4,800 | 1,200 |

* 정착촌 구조개선의 지방비는 전라북도 익산왕궁지역 사업분임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가) 단독시설 · 텁밥제조시설 · 액비저장조설치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 군수")

(나) 공동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금집행, 사업시행과 그 지도 · 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 등 본 사업추진상의 제반업무 수행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0-1899, 189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융자 또는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며, 지방비 대체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

○ 시 · 도 : 축산담당과

○ 시 · 군 · 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 · 축산과 · 농업기술센타)

(3) 사업기간 : 2002.1.1부터 2002.12.31 까지(1년)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 · 군 → 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 · 군, 시 · 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 · 군, 시 · 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 · 군에 예산배정(시 · 도) → 시 · 군에 예산배정(시 · 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 · 군, 시 · 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시 · 군→시 · 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도→시 · 군→사업대상자) → 축산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분뇨 허가 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
· 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집행·융자금대출

(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
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
로하여 2002.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
정하여 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2.1.31한 선정 통
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자료
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
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사
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에 축
산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
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
기술 연구소·농협중앙회·농업시반공
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컨설
팅기관(정착촌은 한성협동회 포함)에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
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서식1〉
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 제13조제1항제
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붙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
금교부 신청 및 융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 결정 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
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대
상자가 당초 합리성 있게 검토하여 확
정통지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사업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부득이 변
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
경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사업계
획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
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
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
였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변경승
인 내용을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보고

(7)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허가·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오분법(汚糞法) 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 공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은 오분법(汚糞法) 제26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자체없이 실시

(8) 축산분뇨처리장비등의 정보자료 제공

-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협회자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기계 품질보증업무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심의위원회의 시설, 기계·장비 등의 종류별 시공 또는 제조·판매업체, 장비의 제원(처리능력·규격·용량 등), 거래가격,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시·도, 시·군, 지역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배부하여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및 자금계획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서 통보한 우량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기계·장비에 관한 시세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축산환경협회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이를

활용하거나 사업대상자에게 알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예방

(9)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상기 (8)항에 의한 우량업체의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공동시설 및 단독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 본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시에도 이를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농가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소액계약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
보험제출 생략가능)

- 하자이행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계〉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나환자 정착촌은 농업시반공사 또는 한성협동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 (준공검사시 각각 확인)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초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을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축산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한 후 ②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 담당)을 실시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6.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 · 텁밥제조시설 · 액비저장 조설치 : 시 · 군 · 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 · 면
- 그외 시설 : 시 · 군 · 자치구 경유 시 · 도

나. 신청자격

(1) 단독시설

- 오분법(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7.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 시설 · 기계설비 보완대상농가
- 4대강(한강 · 낙동강 · 영산강 · 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 돼지 · 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 · 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지역 농 ·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농 · 축협

(3) 텁밥제조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 · 돼지 · 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 · 축 · 산

림조합

(4) 정착촌구조개선

-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또는 축산농가

(5)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다. 신청절차

(1) 단독시설 · 텁밥제조시설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02.1.20까지 시 · 군(또는 읍 · 면장을 경유 시 · 군)에 제출

- 시 · 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 · 도에 2002.3월말까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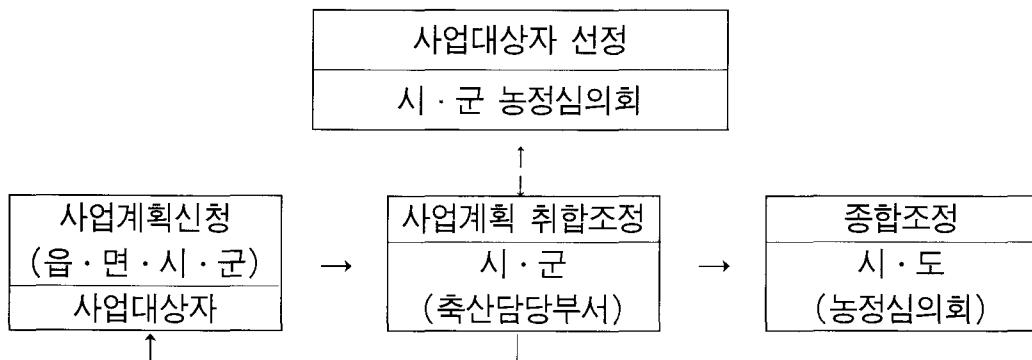
- 시 · 도는 2002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 · 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2.4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리부는 시 · 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 · 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즉시 시 · 도 및 시 · 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 · 도에 통보

- 시 · 도는 확정된 시 · 군별 예산배정내역을 2002.12월말까지 시 · 군에 통보

- 시 · 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2003.1.1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 통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2) 공동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액비 저장조설치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호 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2002.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2.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단독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2002.10월말까지는 제출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003.1.15 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지원조건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텁밥제조시설 : 보조 30%, 융자 7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

방비 5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0%

마. 구비서류

- 농립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과 첨부서류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립부사업실시규정과 본 사업지침에 의함

사. 기타사항

- 2002년도 본 사업지침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 신고기관

- 중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 (02-504-9255, 500-4296)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시·군 : 환경담당부서 [한국양특](#)